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사례

2020-02-03 아마존카

- ※ 장기렌트 및 아마존카 리스 기준
- ※ 법인고객의 경우 해당사업연도 1년 전체기간 동안 임차하면서,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전체기간 동안 가입한 조건으로 계산
- 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연도 1년 전체기간 동안 임차한 조건으로 계산 (2021년1월1일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,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보유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함. 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사례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면제 조건 또는 2021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사업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전체기간 동안 가입한 조건으로 계산)
- ※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년간 1천5백만원까지만 손금산입
- ※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법인은 별도 계산 필요

항 목	계산식 운행기록부 작성							운현	행기록부	비고		
5 7	- 1127	아반떼	쏘나타	그랜저	제네시스G80	제네시스G90	아반떼	쏘나타	그랜저	제네시스G80	제네시스G90	
① 월대여료(VAT포함)		400,400	524,700	655,600	962,500	1,581,800	400,400	524,700	655,600	962,500	1,581,800	48개월견적 중 몇가지 사례를 적용해 봄
② 년간 총대여료(VAT포함)	① × 12	4,804,800	6,296,400	7,867,200	11,550,000	18,981,600	4,804,800	6,296,400	7,867,200	11,550,000	18,981,600	12개월 이용 기준
③ 감가상각비 상당액	② × 70%	3,363,360	4,407,480	5,507,040	8,085,000	13,287,120	3,363,360	4,407,480	5,507,040	8,085,000	13,287,120	장기렌트 및 아마존카 리스
④ 기타비용		3,500,000	4,000,000	4,500,000	5,000,000	6,000,000	3,500,000	4,000,000	4,500,000	5,000,000	6,000,000	유류비 등 기타유지비, 감가상각비 제외
⑤ 합계(총비용)	2 + 4	8,304,800	10,296,400	12,367,200	16,550,000	24,981,600	8,304,800	10,296,400	12,367,200	16,550,000	24,981,600	

업무사용비율 산정

⑥ 총 주행거리(km)		25,0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-	-	-	-	-	
⑦ 업무사용거리(km)		20,000	20,000	20,000	23,000	20,000	-	-	-	-	-	
⑧ 업무사용비율	7) ÷ 6)	80%	80%	80%	92%	80%	100%	100%	100%	91%	60%	운행기록부 미작성시=1천5백만원÷⑤(최대100%)

업무사용 금액

⑨ 감가상각비상당액	3 x 8	2,690,688	3,525,984	4,405,632	7,438,200	10,629,696	3,363,360	4,407,480	5,507,040	7,327,795	7,978,144	
⑩ 관련비용(감가상각비 제외)	(5-3)×8	3,953,152	4,711,136	5,488,128	7,787,800	9,355,584	4,941,440	5,888,920	6,860,160	7,672,205	7,021,856	
⑪ 총 업무사용금액	9 + 10	6,643,840	8,237,120	9,893,760	15,226,000	19,985,280	8,304,800	10,296,400	12,367,200	15,000,000	15,000,000	

손금산입 합계

12	총 손금산입합계	11)	6,643,840	8,237,120	9,893,760	15,226,000	19,985,280	8,304,800	10,296,400	12,367,200	15,000,000	15,000,000	
	⑬ 이월 손금산입액	⑨ - 800만원	0	0	0	0	2,629,696	0	0	0	0	0	감가상각비상당액 중 800만원 초과분
	⑭ 당해연도 손금산입액	12 - 13	6,643,840	8,237,120	9,893,760	15,226,000	17,355,584	8,304,800	10,296,400	12,367,200	15,000,000	15,000,000	
(15) 손금불산입액	(5) - (12)	1,660,960	2,059,280	2,473,440	1,324,000	4,996,320	0	0	0	1,550,000	9,981,600	법인의경우 차량이용자에게 상여등으로 소득처분 (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사외유출로 보아 법 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음)

- ※ 운행기록부 작성한 경우가 운행기록부 미작성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미작성으로 손금처리하는 것이 유리함
- ※ 소득세법 시행령,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 상향 조정 : 연간 1000만원 限 → 연간 1500만원 限 [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,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제6항 개정 2020.2]
- ※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과 실제 사례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※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비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회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